

의안번호	제 33 호	의 결 사 항
의결 년월일	2004. 9 . .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2004. 8. 4 .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
----------	----

제출일자	2004. 9. 7
제출자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대전고속도로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후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우
리시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일부시설물을 민자유치로 기부
채납토록 하여 시의 재정 부담 경감과 민간인 참여를 촉진시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 변경
- 현행 3필지 18,389㎡ → 26필지 27,872㎡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체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36억원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2004. 7. 20 ~ 2004. 8. 10)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및 규모)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별표1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

연 번	위 치	규모(㎡)	비 고
1	사천시 대방동 765-3	12,608	
2	사천시 대방동 765-14	1,848	
3	사천시 대방동 765-15	3,933	
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0-2	6	
5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7	390	
6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1	456	
7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5	94	
8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13	2,136	
9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3	172	
10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11	215	
11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10	63	
12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6	181	
13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8-1	1,032	
1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12	63	
15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9	162	
16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8	50	
17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5-21	41	
18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5-20	61	
19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0	565	
20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5-28	2,373	
21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5-22	159	
22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78-21	54	
23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78-19	89	
2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6	699	
25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15-7	360	
26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15-8	62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치 및 규모) 관광지원시설의 <u>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위치는 사천시 대방동 765-3번지, 765-4번지, 765-9번지에 둔다.</p> <p>2. 규모는 부지면적 18,389평방미터로 <u>한다.</u></p>	<p>제3조(위치 및 규모) 관광지원시설의 <u>위치 및 규모는 별표1과 같다.</u></p>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재정법 제75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기부재산의 사용·수익허가)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제1항의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의 평가액은 사용·수익허가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공유재산의 종류)제1항제1호

1. 행정재산 : 다음 각목의 재산

가.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나.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다.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제2호 당해 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2.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